
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

생활제품안전과
02-509-7249

1. 개정이유

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되,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하고, 안전·품질표시 제품에도 국가통합마크(☑)를 부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, 정기검사의 면제확대 및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안전인증의 조건부인증을 명확화 하려는 것이다.

라. 안전인증의 단순보완 사항은 조건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정기검사는 10일전에 분서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.

∴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ke.go.kr> — 법령정보 — 법령·입법예고)를 참조

2. 주요내용

가. 불법·불량 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·품질표시 품목으로 대폭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완화

나.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정기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.

다. 마크관련 표시항목의 단순화 및 안전·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마크표시 부여로 소비자의 안전 확인의 편리성 도모.

| 기술표준 2009.5